



쿤산 아이수어투어푸 화공유한공사 등 VS 상해 화공연구원간 의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18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상해시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5) 沪高民三 (知) 终字第40号
판결 일자	2005년 6월 27일	판결 결과	상소 기각 (권리자 승)
원심원고(피상소인)	상해화공연구원		
원심피고(상소인)	1. 쿤산 아이수어투어푸 화공유한공사, 2. 장쑤 휘이홍 국제집체 토산품 수출입 수저우 유한공사, 3. 천웨이위엔, 4. 청쌍시용, 5. 치양찌엔캉 (3, 4, 5 피고는 상소하지 않음)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20조, 민법통칙 제118조, 제130조, 제134조, 최고인민법원의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약간의 문제 의견 제170조		
영업비밀	15N표기화합물 생산과 제조에 관한 기술비밀		
키워드 (Keyword)	기술비밀(技术秘密), 증명책임(举证责任), 연대배상(连带赔偿), 침해정지(停止侵害), 영향제거(消除影响), 사죄광고(赔礼道歉)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상해화공연구원은 1961년부터 NO-HNO₃화학교환법을 사용한 15N표기화합물을 연구개발하여 99%의 고(高)순제도의 15N표기화합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연구원이다.

원심 피고 천웨이위엔, 치양찌엔캉, 청쌍시용은 원심 원고 상해 화공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원심 원고의 기술비밀을 알고 있는 기술직원들로, 사직 이후 피고 쿤산 아이수어투어푸 화공유한공사(이하 '아이수어투어푸공사'), 장쑤 휘이홍 국제집체 토산품 수출입 수저우 유한공사(이하 '휘이홍 수저우 공사')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원심 원고는 원심 피고들에 대하여 15N표기화합물 기술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심 피고들이 불복하여 상소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피상소인)	⇔	원심 피고(상소인)
15N표기화합물 제조기술은 영업비밀을 구성한다.		원심 원고의 15N표기화합물 제조기술은 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다.
천웨이위엔, 청쌍시용, 치양지엔캉은 상해화공원구원의 주요기술직원으로, 15N기술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영업비밀보호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하였다.		원심 피고들은 본안과 관련한 15N표기화합물 제조기술을 자체의 연구개발을 통해 얻었다.
아이수어투어푸공사는 부정확한 수단을 이용해, 상해화공원구원의 영업비밀을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기술검증기관의 검증자격에 문제가 있다.
휘이홍 수저우 공사는 권리 침해제품임 침해제품을 판매하였다.		원심 피고들의 행위는 영업비밀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04 판결 요지

원고 화공원의 15N기술은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므로 15N기술은 원고의 기술비밀에 속하고, 당연히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피고 천웨이위엔, 청쌍시용, 지양지엔캉, 아이우오투오푸공사, 후이홍수저우공사는 고의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다섯은 모두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상소인의 상소이유는 증거증명이 부족하므로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법제도는, <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영업비밀의 정의 및 침해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통칙> 제118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조항에서, 구체

적으로 침해행위에 대해서 침해정지, 영향제거, 손실배상을 민사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4조에서 민사책임의 부담방식으로, 침해정지, 방해제거, 위협 제거, 손실배상, 영향제거, 명예 회복, 사죄광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원심 원고는 위 법규정에 근거하여, 1) 침해행위 정지, 2) 생산 설비 소각, 3) 손실배상, 4) 사죄광고 게재 및 영향 제거를 청구하였고, 원심 법원은 1), 3), 4) 중 영향 제거의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사죄광고는 인정하지 않았고, 2) 생산 설비의 소각은 민사책임의 부담방식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하였다. 상소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